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40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허성무
이성윤 · 최혁진 · 김 현
복기왕 · 안도걸 · 이기현
박지혜 · 이광희 · 김우영
임오경 · 서삼석 · 노종면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제2조, 제5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의 제목 중 “정부”를 “정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관광 향유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부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 “국가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국민의 권리)</u>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u>정부</u>의 시책) (생 략)	제2조(<u>정부</u> 등의 시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관광 향유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부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법제상의 조치) <u>국가</u>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법제상의 조치)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는----- ----- ----- ----- -----.